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’26.3월 공포, ’26.7월 시행) 및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’25.12 공포, ’26.12 시행)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·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또한,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·시설 등의 임대요율을 시장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공모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,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물류단지 공사시행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

(제8조, 제10조, 제31조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)

나.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·시설 등의 임대료율로 3%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, 지역 여건 등에 따라 1%p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(제25조)

다.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하도록 개선(제27조)

라. 스마트물류센터 인증(예비인증 포함) 신청 시 제출서류 중 물류센터 설계도면 등 5종의 서류를 자체평가서로 통폐합하고,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제출 면제(제13조의3, 제13조의5, 별지 제8호의6서식, 별지 제8호의8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)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 이)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각각 “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

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의5제2항 중 “제13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같은 항 제9호”를 “제13조의3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영 제40조제1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료율”이란 100분의 3 또는 공급공고일 또는 공급통지일(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)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(「은행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영 제40조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료율”이란 100

분의 3 또는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중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.

제27조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일간신문”을 “일간신문 및 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8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
	주소		
공사계획	위치		
	종류/규모		
	○ 부지면적: m ² ○ 건축연면적 합계: m ² ○ 사업비: 백만원		
	○ 착공예정일: 년 월 일 ○ 준공예정일: 년 월 일		
○ 물류터미널의 종류:			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또는 시·도지사등 귀하

첨부서류	공사계획서 1부	수수료 15,000원
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1. 공사계획서에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2. 물류터미널의 종류에는 복합물류터미널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신청서 제출 → 접 수 → 검 토 → 인 가 → 통 보
신청인 처리기관: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(물류터미널 사업 담당부서)

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
	주소		

공사계획	위치		
	종류/규모		
	○ 부지면적: m ²	○ 건축연면적 합계: m ²	○ 사업비: 백만원
	○ 착공예정일: 년 월 일	○ 준공예정일: 년 월 일	
○ 물류터미널의 종류:			

변경 내용	변경 전	변경 후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등 귀하

첨부서류	1.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	수수료 15,000원
------	--	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	
1.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뒤쪽에 변경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2. 물류터미널의 종류에는 복합물류터미널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을 적습니다.	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제출	→	접수	→	검토	→	인가	→	통보
신청인		처리기관: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(물류터미널 사업 담당부서)						

변경 내용이 다수인 경우

[illegible]

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업체명			법인등록번호	
	주 소			대표자 성명	
	실 무 담당자	성명	부서	직위	
	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 주소	
신청대상 물류창고	건축물명			착공(예정)일	
	소재지			준공(예정)일	
	연면적			용도	

인증받은 실적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1부	수수료 3백만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0일 (20일 추가 연장가능)	
신청인	업체명		법인등록번호	
	주 소		대표자 성명	
	실 무 담당자	성명	부서	직위
	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 주소
신청대상 물류창고	건축물명		착공 예정일	
	소재지		준공 예정일	
	연면적		용도	
인증받은 실적				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1부	수수료 3백만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) ① ~ ③ (생략)	제8조(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변경인가신청의 내용이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하여야 한다.	④ -----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이-----.
제10조(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	제10조(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) ① ----- 시·도지사등은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	② ----- 시·도지사등은 -----.

1. ~ 3. (생략)

제13조의3(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 <단서 신설>

1. (생략)

2.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·보관·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

3. 설계 변경 확인서(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)

4. 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

5.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

6. 품질·안전·환경관리 매뉴얼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3(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.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증명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열(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)

7.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

8. 별지 제8호의9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사본(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
9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
10. (생략)

③ ~ ⑧ (생략)

제13조의5(예비인증의 신청 등)

① (생략)

② 예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13조의3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와 해당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<후단 신설> <단서 신설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10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5(예비인증의 신청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제13조의3
제2항제1호 -----

-----.

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25조(임대요율) <신설>

<신설>

영 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”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. 다만,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

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임대요율) ① 영 제40조제1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”이란 100분의 3 또는 공급공고일 또는 공급통지일(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)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(「은행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영 제40조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”이란 100분의 3 또는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중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

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빼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.

제27조(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)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복합개발시행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1.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,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

가. ~ 다. (생략)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1조(수수료) ① (생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.

제27조(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) ① -----

--.

1. -----

일간신문 및 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시·도지사등은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